

## 우정사업본부 투자권유준칙

제정 2018. 6.27.  
개정 2019.10. 1.  
개정 2020. 1.10.  
개정 2020. 7. 1.  
개정 2021. 7. 1.  
개정 2024. 3. 1.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 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 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 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직원 등” 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 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 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성 상품” 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대출성 상품” 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라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 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투자권유” 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문금융소비자” (이하 “전문투자자” 라 한다)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금소법 제2조 제9호 및 금소법 시행령 제2조 제10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일반금융소비자” (이하 “투자자” 라 한다)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고객을 말한다.
5. “포트폴리오투자” 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6.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가.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 나.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원 등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 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직원 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우정사업본부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장 투자자 구분 등

**제4조(방문 목적 확인)** ① 직원 등은 투자자 방문 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체결의 권유가 수반되지 않은 정보제공 등은 투자권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투자권유가 수반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정보제공의 경우에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응할 수 있다.

1. 고객의 단순 질의에 대한 답변
2. 투자권유가 아닌 고객의 단순 상품내용 설명 요구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제5조(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① 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직원 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우정사업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① 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서)” 를 징구하고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확인서의 취지: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2. 유의사항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투자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의미와 그 위험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 ③ 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④ 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제7조(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 ① 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 ② 직원 등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11조 제6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10조 및 11조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 ③ 직원 등은 제2항의 경우에,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 제1절 투자자정보

- 제8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① 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정보는 반드시 투자자가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직원이 면담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를 컴퓨터 단말기에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투자자에게 확인받을 수 있다.
  - ③ 온라인 거래 시에도 적합성원칙 등 투자권유절차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상에 구축하여야 한다.
  - ④ 온라인 투자자들 중 투자성향이 확인된 투자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에 대해 우선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는 펀드에 관한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투자자가 다른 펀드에 관한 정보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펀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가 우정사업본부의 투자권유 없이 투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화면을 구축해야 한다.
  - ⑤ 우정사업본부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펀드가 멀티클래스 펀드인 경우, 클래스별 수수료 및 보수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⑥ 창구 및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온라인 매체에 제시하는 경우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도 표기한다.
  - ⑦ 직원 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 제1호(적합성 판단 기준)”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 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⑧ 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정사업본부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 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제9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① 직원 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우정사업본부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알린 후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직원 등은 우정사업본부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제2절 투자권유

**제10조(투자권유 절차)** ① 직원 등은 우정사업본부가 정한 “별표 제1호(적합성 판단 기준)” 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 등은 우정사업본부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직원 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3호(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 기준)”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④ 직원 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자권유 없이 투자가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서)” 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부적합 상품)을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실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2. 유의사항 :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등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서’ 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한다.

⑤ 직원 등은 1의 투자자에게 2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적합성 보고서)” 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교부대상자 :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2. 대상상품 : ELS, ELF, ELT, DLS, DLF, DLT

⑥ 직원 등은 금소법 제17조 제2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① 직원 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10조 제1항에 따른 “별표 제1호(적합성 판단 기준)” 과 “별표 제5호(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직원 등은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투자권유 시 유의사항)** ① 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1)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가)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3) 신탁계약
  - 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나)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 1)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 2) 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5.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6.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7.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8.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9.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0.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11.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12. 관계법령등 및 우정사업본부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② 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③ 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제12조2(확인서 징구 계약 관련 유의사항)** ①우정사업본부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투자권유불원)는 우체국 관리책임자를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 (온라인거래시에는 우정사업본부가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사후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② 우정사업본부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에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현황 및 관련 민원 현황 등을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파악 및 점검하고 내부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절 설명의무

- 제13조(설명 의무)** ① 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2. 직원 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 ③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1.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 ④ 직원 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특

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직원 등은 동일한 유형의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경험 등 간략한 질문을 통해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파악하여야만 한다.

1. 신규상품, 구조가 복잡한 상품이나 위험상품을 판매하거나 금융지식이 부족한 투자자 또는 취약투자자 등에게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2.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있거나 해당 상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투자자 등에게는 보다 간단한 설명이 가능하다.
- ⑤ 직원 등이 법 제124조에 따라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설명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종류(클래스)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은 ‘판매수수료 부과방식 - 판매경로 - 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는 점
  2.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에 대한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
- ⑥ 직원 등은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직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3.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⑧ 직원 등은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⑨ 직원 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⑩ 직원 등은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⑪ 직원 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고객센터의 이용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제14조(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① 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2.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3.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4.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 제4절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15조(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 ① 우정사업본부는 “별표 제4호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② 위험등급은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한다.
- ③ 우정사업본부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④ 직원 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측정 등을 우정사업본부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 ⑤ 직원 등은 포트폴리오 투자권유 시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및 지식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⑥ 우정사업본부는 투자자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표 제3호(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 기준)”을 상담창구에 비치하고, 투자권유시 이를 활용하여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비교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적인 위험수준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 기준”은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6가지 색상으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 위험도에 대한 투자자의 직관적인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 제5절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6조(계약서류의 교부)** ① 우정사업본부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 우정사업본부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 ③ 우정사업본부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우정사업본부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등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제17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8조(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 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자기매매 등을 위한 권유 금지: 직원 등은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부당권유 행위 금지 : 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원 등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직원 등은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원 등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우정사업본부의 인수 계약 체결, 우정사업본부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투자자가 매매권유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매매를 권유한 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우정사업본부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직원 등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직원 등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우

정사업본부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 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직원 등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8. 직원 등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직원 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① 우정사업본부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우정사업본부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우정사업본부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우정사업본부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부 칙(2018.6.27.)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10.1.)

이 준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1.10.)

이 준칙은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7.1.)

이 준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7.1.)

이 준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3.1.)**

이 준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적합성 판단 기준

- 투자성향 점수화(Scoring) 방식 : 각 정보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총합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으로 확정함
  - 파악된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권유 가능한 위험도의 상품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함

### ■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

#### I. 다음질문은 투자자의 재무적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 1. 연령대

- ① 19세 이하(2.5)    ② 20대(2.5)    ③ 30대(2.0)    ④ 40대(1.5)    ⑤ 50대(1.0)    ⑥ 60대 이상(0.5)

##### 2. 연소득 현황(법인: 매출액)

- 개인: ① 3천만원 이하(1.0)    ② 5천만원 이하(2.0)    ③ 7천만원 이하(3.0)    ④ 9천만원 이하(3.5)    ⑤ 9천만원 초과(4.0)

- 법인: ① 1억이하(1.0)    ② 3억이하(2.0)    ③ 5억이하(3.0)    ④ 10억이하(3.5)    ⑤ 10억초과(4.0)

##### 3. 총자산 현황

- 개인: ① 1억 이하(1.0)    ② 5억 이하(2.0)    ③ 10억 이하(2.5)    ④ 20억 이하(3.0)    ⑤ 20억 초과(3.5)

- 법인: ① 5억 이하(1.0)    ② 10억 이하(2.0)    ③ 50억 이하(2.5)    ④ 100억 이하(3.0)    ⑤ 100억 초과(3.5)

##### 4. 총부채 현황

- 개인: ① 부채없음(4.0)    ② 3천만원 이하(3.5)    ③ 5천만원 이하(3.0)    ④ 1억 이하(2.0)    ⑤ 1억 초과(1.0)

- 법인: ① 부채없음(4.0)    ② 1억 이하(3.5)    ③ 3억 이하(3.0)    ④ 5억 이하(2.0)    ⑤ 5억 초과(1.0)

#### II. 다음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경험 및 금융지식에 대한 전문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 5.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중복 응답 가능)

- ①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1)  
 ② 채권형 펀드, 원금보장형 ELS,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등(2.5)  
 ③ 혼합형펀드,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등(3.5)  
 ④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등(4.5)  
 ⑤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ELW, 선물옵션, 주식신용거래 등(5.5)

##### 6. 유사한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 기간

- ① 투자경험 없음(0.5)    ② 1년 미만(1.0)    ③ 3년 미만(1.5)    ④ 5년 미만(2.0)    ⑤ 5년 이상(2.5)

##### 7. 유사한 금융투자상품 (평균) 거래빈도

- ① 투자경험 없음(0.5)    ② 연간(1.0)    ③ 분기당(1.5)    ④ 월간(2.0)    ⑤ 주당(2.5)

8. 금융투자상품 (연간) 취득 및 처분금액

- ① 투자경험 없음(0.5) ② 1백만원 이하(1.0) ③ 5백만원 이하(1.5) ④ 5천만원 이하(2.0) ⑤ 5천만원 초과(2.5)

9. 과거 투자했던 상품의 취득 및 처분 목적

- ① 투자경험 없음(0.5) ② 생활자금(1.0) ③ 주택자금(1.5) ④ 노후자금(2.0) ⑤ 여유자금(2.5)

10.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 ①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5.5)  
 ②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4)  
 ③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2.5)  
 ④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1)

**Ⅲ. 다음은 투자자의 투자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파악하기 위한 투자목적 및 위험에 대한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현재 투자하는 자금의 향후 사용 목적

- ① 생활자금(1.0) ② 주택자금(2.0) ③ 노후자금(3.0) ④ 여유자금(4.0)  
 ※③번 답변 선택 & 60대 이상인 경우 “안정형” 투자성향으로 분류되며, 「매우낮은위험 (최저위험)」 상품만 가입 가능

12. 투자수익 및 위험에 대한 태도

- ① 투자수익을 고려하나 원금보존이 더 중요(4.5) ② 원금보존을 고려하나 투자수익이 더 중요(6.5)  
 ③ 손실위험이 있더라도 투자수익이 중요(8.5)  
 ※①번 답변 선택 시 “안정형” 투자성향으로 분류되며, 「매우낮은위험(최저위험)」 상품만 가입 가능

13. 현재 투자하는 자금의 기대이익 및 손실 감내수준

- ① 원금의 ±5% 범위(2.0) ② 원금의 ±10% 범위(5.0) ③ 원금의 ±20% 범위(7.5) ④ 원금의 ±20% 초과(10.0)  
 ※①번 답변 선택 시 “안정형” 투자성향으로 분류되며, 「매우낮은위험(최저위험)」 상품만 가입 가능

14. 투자하는 자금의 투자가능 기간

- ① 3년 이상(2.5) ② 2년 이상~3년 미만(2) ③ 1년 이상~2년 미만(1.5) ④ 6개월 이상~1년 미만(1)  
 ⑤ 6개월 미만(0.5)

**■ 점수 계산 방법**

1번부터 14번까지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60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단, 법인의 경우 2번부터 14번까지 응답 결과에 따른 점수 합산(총점57.5점)

※(예) 1번부터 14번까지의 합이 43.5점인 경우,  $43.5/60점 \times 100 = 72.50점$

**■ 투자자정보 확인서 Factor-out 기준**

아래의 경우 스코어링 점수와 상관없이 “안정형” 으로 분류

- 60대이상 고객이 11번 향후 거래목적 자금 ‘③노후자금’ 선택하는 경우
- 12번 투자수익 및 위험에 대한 태도 ‘①투자수익을 고려하나 원금보존이 더 중요’ 선택시
- 13번 현재 투자하는 자금 손실 감내수준 ‘①원금의 ±5% 범위’ 선택시



**■ 투자자성향 분류 :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5단계로 분류**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 43점	43점 ≤ < 55점	55점 ≤ < 68점	68점 ≤ < 81점	81점 ≤

**■ 투자자정보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

구분	성향
안정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안정추구형	투자원금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유형
위험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유형
적극투자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유형
공격투자형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 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유형

## 투자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 상품 분류 기준

구 분	1 등급 (매우높은위험)	2 등급 (높은위험)	3 등급 (다소높은위험)	4 등급 (보통위험)	5 등급 (낮은위험)	6 등급 (매우낮은위험)
안 정 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상기 분류기준 적용 범위는 장외과생상품을 제외한 상품에 한함

(별표 제3호) <개정 2024.3.1.>

##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 기준

구 분	1 등급 (매우높은위험)	2 등급 (높은위험)	3 등급 (다소높은위험)	4 등급 (보통위험)	5 등급 (낮은위험)	6 등급 (매우낮은위험)
펀드	설정 3년미만  (별표 제4호)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내, <표 2> 설정 3년 미만 펀드의 상품군별 위험등급 분류 기준을 따른다.					
	설정 3년경과  97.5% VaR 50% 초과	97.5% VaR 50% 이하	97.5% VaR 30% 이하	97.5% VaR 20% 이하	97.5% VaR 10% 이하	97.5% VaR 1% 이하

※ 상기기준은 일반적인 주요 분류기준을 의미하며,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판매 펀드상품 선정 지침에 의거하여 해당 투자상품의 투자설명서 또는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도를 참고하여 다르게 분류 가능

##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본 기준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과 관련하여 위험등급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2024. 3. 1. 이후 신규 판매되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 산정 시부터 적용하고, 기존에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재산정 시점이 도래한 때부터 적용한다.

### I.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

#### 1. 적용대상 금융상품

- 일반투자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투자성 상품으로 집합투자증권, 지분증권,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신탁계약, 일임계약 등을 포함하되, 금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호의 상품\*을 제외한다.

\* 연계투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 2. 위험등급 산정의 주체

- 우정사업본부는 「1. 적용대상 금융상품」에 포함되는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전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우정사업본부가 정한 위험등급과 금융상품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이 다를 경우, 우정사업본부는 제조회사와 위험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한다.
- 우정사업본부는 금융상품 판매 시 당해 금융상품의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위험등급을 우정사업본부가 정한 위험등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우정사업본부는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그 절차와 방식 등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른다.

– 신상품은 상품출시 관련 의사결정 단계에서 위험등급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존 상품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에 따라 선정한 표본 상품을 대상으로 등급산정 방법론 및 적정성을 검증한다.

#### 3. 위험등급 체계

- 위험등급은 6단계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하며 그 수가 커질수록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등급 구간별 명칭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 4. 위험등급 산정방식

- 우정사업본부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각 위험요소별 다음 사항들을 참고

하여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것은 ‘Ⅱ.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① 기초자산의 변동성, ② 신용등급, ③ 상품구조의 복잡성, ④ 최대 원금손실 가능액, ⑤ 환매·매매의 용이성, ⑥ 환율의 변동성, ⑦ 그 밖에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① 시장위험\* 등급은 투자성 상품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Ⅱ.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단계로 산정한다.

\* 기초자산의 변동성 등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원금손실 위험을 통칭

② 신용위험\* 등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한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칭

- 국내신용등급과 해외신용등급이 상이한 경우, 국내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신용등급만 있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5] 35호 라목에 따라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

**<표1>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위험등급 분류**

구분	6등급(저위험)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고위험)
장기등급	국공채 등 <sup>주1)</sup> , AAA~ AA-		A+ ~ A-	BBB+ ~ BBB-	BB+ ~ BB-	B+ 이하 또는 무등급
단기등급	A1		A2	A3	B 이하 또는 무등급	

\* 신용평가회사에 따라 등급 표시방법이 상이한 경우 상기 등급체계를 준용

주1) 자본시장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등으로 사채권에 비해 신용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채무증권

③ 시장위험 등급과 신용위험 등급을 모두 산정하는 상품의 경우 「Ⅱ.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모두 고려한 종합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④ 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종합 위험등급을 1등급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외화표시 파생결합증권,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 해외채권 등

- 다만, 해당 외국통화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상향할 수 있고,

- 환율위험에 대한 헤지가 이루어져 환율의 변동성이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환율위험이 위험등급에 이미 반영된 경우 등 등급 상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유동성위험은 해당 상품의 중도환매 가능 여부 및 중도환매시 비용의 정도에 따라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3단계로 구분하고, 관련 세부사항\*은 설명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로 기재한다.

\* 중도환매 시 발생하는 비용의 수준 등 환매의 용이성을 제한하는 요소 세부내역

- 또한 상품 구조상 중도 환매·매매 등에 제약이 없더라도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환매·매매의 용이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유동성위험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서에 별도 기재한다.
- 우정사업본부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유동성위험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에 직접 반영(등급 상향)할 수 있다.
- ⑥ 우정사업본부는 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원금손실 등 상품의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II.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위험등급이 실제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을 상향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 5. 위험등급 산정 시기

- 위험등급은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1회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판매 및 환매가 가능한 상품(예: 개방형 펀드)의 경우 연 1회(매년 결산시점) 등급을 재산정한다.
- 다만,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특정 위험요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기타 현재 사용 중인 위험등급이 시장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정사업본부의 판단에 따라 위험등급을 재산정할 수 있다.

## 6. 위험등급 관련 내부통제

- 우정사업본부는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상품 출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 평가·검토 절차를 반영하고 이미 판매 중인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 신규상품 출시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상품 위험등급의 적정성 평가·검토절차를 반영한다.
- 기존상품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위한 절차는 내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 기존 상품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내부기준 >

- 가. (적정성 검증 주기) : 결산이 도래한 월이 포함된 분기의 익월말까지 검증 완료
- 나. (적정성 검증 대상 상품) : 해당 분기에 결산이 도래한 개방형·추가형 펀드
  - 현재 판매를 중단하거나, 정액적립식 등으로 추가 납입만 받고 있는 펀드는 적용 제외
- 다. (적정성 검증 대상 상품군 표본 선정) 우정사업본부 전문 조직에서 판매금액, 위험도 변경 여부, 고객군, 고위험 상품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선정
  - (검증대상) 우체국 전체 판매 펀드
  - (위험도 변경) 해당 분기에 결산 후 위험도가 변경된 펀드
  - (투자자보호) 초고령투자자·부적합 투자자에 대한 연간 판매액 최상위 펀드, 추천펀드 등
- ※ 상기 기준 외에도 랜덤하게 일부 상품을 추출하여 검증할 수 있고, 이밖에 급작스러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위험도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재검증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품 제조회사는 검증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우정사업본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 주된 투자대상 자산에 30% 이상 부실(금융투자업규정 별표 제18호에 따른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부실)이 발생 하는 상품



## 7. 위험등급의 표시·설명 방법

- 우정사업본부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유동성에 관한 별도 등급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명함에 있어서 각 위험등급별로 다른 색상으로 나타내는 등 고객이 각 등급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한다.
  - 또한 위험등급 산정에 반영한 중요 위험요소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기재·설명한다.
- 우정사업본부는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II.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

### 1. 집합투자증권

#### 가. 공모펀드

- 설정 3년 미만 펀드의 경우 <표2>에 따라 편입대상 자산의 상품군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분류한다.

**<표 2> 설정 3년 미만 펀드의 상품군별 위험등급 분류**

등급	국내투자 신규펀드 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4. 상기 표에 정의된 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설정 3년 경과 펀드는 출시이후부터 등급산정 기준일까지의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을 토대로 <표3>에 따른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표 3>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구분	1등급 (고위험)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sqrt{250}$ )를 곱해 산출
-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VaR로 산출한 위험등급에서 1등급 상향한다.
-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과거 수익률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 다만,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펀드는 수익률 변동성에 신용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입자산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 \* (예) 장외채권이거나 매매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낮아 시가변동이 미미한 경우
-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I.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본 기준은 우정사업본부가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 1. 고령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 고령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쇠약과 더불어 기억력과 이해력이 저하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 또한, 대부분의 고령투자자들이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잔여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 아울러, 최근 금융투자상품이 구조화·첨단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 2. 고령투자자의 정의

- “고령투자자”란 **65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그 중 **80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 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한다.
-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령투자자에 적용되는 판매절차를 준용하도록 한다.
- 계약명의인이 고령이 아니면서 대리인이 고령인 경우와 계약명의인이 고령이면서 대리인이 고령이 아닌 경우에도 고령투자자에게 적용하는 판매절차를 준용하도록 한다.

### 3. 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 (1)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마련

- 고령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는 본부 내 예금사업과로 한다.
-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영업점에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 (2)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한다.
-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주로 장외에서 거래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구조화 증권, 조건부자본증권 및 이들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상품 등을 들 수 있다.
-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정할 수 있다.

#### (3)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 시 사전 확인

- 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우체국 관리책임자가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우체국 관리책임자가는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투자권유 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우체국 관리책임자가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투자권유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우체국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최근 투자자 정보 변경여부(예시:근황 문의)
  - 투자자금의 성격(예시:생계자금 해당여부)
  - 투자권유 과정의 적법성(예시:부적합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변경 여부)
  - 주요 설명내용의 이해여부(예시:손실가능성, 상품의 기본적 구조 이해 여부)
  - 사리분별능력의 현저한 변화 유무(예시:말투, 기억수준 등 고려)

#### 4.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 (1) 고령투자자 판매절차 내규 마련 및 교육 강화

- 고령투자자 응대방법 및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등을 담은 내규를 제정해야 한다.
- 직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내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2) 내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

-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 등을 통해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안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 (3) 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 (4) 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5. 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 (1)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 자제

- 초고령자에게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
-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우정사업본부 판매정책에 반영된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고, 직원의 투자권유가 없는데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를 자제하여야 한다.

##### (2) 조력자와의 상담(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경우)

-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우체국 관리책임자가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한다.

##### (3) 사후모니터링 강화

-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피콜 등을 통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6. 상담내용 등의 기록·유지

- 향후 분쟁 등에 대비 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판매직원 또는 우체국 관리책임자가 기록·유지한다.

(별지 제1호) <개정 2019.10.1., 2020.1.10., 2021.7.1., 2024.3.1.> <보관용>

## 투자자정보 확인서

- 본 “투자자정보 확인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고객님의 상황에 맞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잘못된 답변은 우정사업본부로 하여금 고객님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님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은 취약 금융소비자 입니까? 취약 금융소비자 여부 (  예       아니오 )**

- “예”는 1번 항목으로 “아니오”는 2번 항목으로 이동
- 취약금융소비자 :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한 65세 이상 고령자, 은퇴자, 주부 등

**1.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강화된 설명의무 확인 (개인사업자, 법인은 제외)**

취약금융소비자가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상품의 주요 특성에 대한 설명에 앞서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을 우선적으로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어떤 유형의 취약금융소비자 입니까?  
 65세 이상 고령자       은퇴자       주부       기타(      )
- 65세 이상 고령자, 은퇴자, 주부 등 해당여부에 대한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 [정보 제공 동의시] 고객님의께서는 투자 시 아래 불이익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명 들으셨습니까?  
 예       아니오

- 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가능범위는 각 상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투자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상품의 중도해지시 환매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상품의 종류에 따라 중도해지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상품별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 시 불이익 항목을 (간이)투자설명서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취약금융소비자 설명의무 확인은 금융투자상품(펀드) 매 신규시마다 수행하고 서류를 징구해야 합니다

**2. 투자자 구분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

<b>투자자 구분</b>	<input type="checkbox"/> 일반투자자(개인) <input type="checkbox"/> 일반투자자(법인) <input type="checkbox"/> 전문투자자
<b>투자권유 희망여부</b>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 불원 및 투자자정보 미제공 <small>※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고객께서는 투자권유가 제한되며 일반투자자로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small>
<b>기존 정보 변경 여부 (투자권유 희망 고객)</b>	<input type="checkbox"/> 기존정보와 동일 <input type="checkbox"/> 신규등록 및 기존 정보변경 <small>※ 투자자정보가 기존 정보와 동일한 경우 다음의 투자자 정보 확인 절차가 생략됩니다.</small>

**3. 투자자 정보 확인**

1. 다음 질문은 투자자의 재무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b>1.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법인 생략)</b>	① 19세 이하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b>2. 연소득 현황은 얼마나 되십니까? (법인은 매출액 기준)</b>	개인	① 3천만원 이하    ② 5천만원 이하    ③ 7천만원 이하    ④ 9천만원 이하 ⑤ 9천만원 초과				
	법인	① 1억이하    ② 3억이하    ③ 5억이하    ④ 10억이하    ⑤ 10억초과				
<b>3. 현재 총 자산은 얼마나 되십니까?</b>	개인	① 1억 이하    ② 5억 이하    ③ 10억 이하    ④ 20억 이하    ⑤ 20억 초과				
	법인	① 5억이하    ② 10억 이하    ③ 50억 이하    ④ 100억 이하    ⑤ 100억 초과				



4. 현재 부채는 얼마나 되십니까? (전 금융기관)	개인	① 부채없음 ② 3천만원 이하 ③ 5천만원 이하 ④ 1억 이하 ⑤ 1억 초과
	법인	① 부채없음 ② 1억 이하 ③ 3억 이하 ④ 5억 이하 ⑤ 5억 초과

II. 다음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경험 및 금융지식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5.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중복선택가능)	①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② 채권형 펀드, 원금보장형 ELS,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등 ③ 혼합형펀드,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신용도가 중간 등급의 회사채 등 ④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등 ⑤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선물옵션, 주식, 신용거래 등
6. 유사한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투자경험 없음 ② 1년 미만 ③ 3년 미만 ④ 5년 미만 ⑤ 5년 이상
7. 유사한 금융투자상품의(평균) 거래 빈도는 얼마나 되십니까?	① 투자경험 없음 ② 연간 ③ 분기당 ④ 월간 ⑤ 주당
8. 금융투자상품의(연간) 취득 및 처분 금액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투자경험 없음 ② 1백만원 이하 ③ 5백만원 이하 ④ 5천만원 이하 ⑤ 5천만원 초과
9. 과거 투자했던 상품의 취득 및 처분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투자경험 없음 ② 생활자금 ③ 주택자금 ④ 노후자금 ⑤ 여유자금
10. 고객님의께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본인의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②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③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④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III. 다음은 투자자의 투자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11. 현재 투자하는 자금의 향후 사용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생활자금 ② 주택자금 ③ 노후자금 ④ 여유자금
12. 투자수익 및 위험에 대한 태도는 어느 것에 해당하십니까?	① 투자수익을 고려하나 원금보존이 더 중요 ② 원금보존을 고려하나 투자수익이 더 중요 ③ 손실위험이 있더라도 투자수익이 중요
13. 현재 투자하는 자금의 기대 이익 및 손실 감내 수준은 무엇입니까?	① 원금의 ±5% 범위 ② 원금의 ±10% 범위 ③ 원금의 ±20% 범위 ④ 원금의 ±20% 초과
14. 현재 투자하는 자금의 투자 예정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3년 이상 ② 2년 이상~3년 미만 ③ 1년 이상~2년 미만 ④ 6개월 이상~1년 미만 ⑤ 6개월 미만

본인은 우정사업본부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우정사업본부에 통지하여야 우정사업본부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년 월 일 본인 : \_\_\_\_\_(인/서명) 대리인 : \_\_\_\_\_(인/서명)

본 투자자 질문지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되었으며, 동 투자적합성 평가의 결과는 고객님의께서 제공하신 정보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투자자정보 확인서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고객님의에게 적합한 펀드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만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우정사업본부에 의해 기밀로 보호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별지 제2-1호) &lt;개정 2019.10.1., 2020.7.1., 2021.7.1.&gt; &lt;보관(교부)용&gt;

##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서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 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고객님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우정사업본부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적합성 원칙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 고객님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우정사업 본부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설명의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 투자자 확인사항

상기 기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권유 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아래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1. 투자권유 희망 여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 2.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년 월 일 대리인 (인/서명) 고객명 (인/서명)

판매직원 (인/서명)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는 않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우정사업본부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별지 제2-2호) <개정 2019.10.1., 2020.7.1., 2021.7.1.> <보관(교부)용>

##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서

<b>&lt;전산인자&gt;</b>	
처리일련번호	*****
투자자확인서	고객명 ***
투자성향	: 안정형/매우낮은위험
투자상품	: (낮은위험) 키움장대트리플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처리국	: / 처리자 : / 처리일자 :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은 우정사업본부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우정사업본부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적합성 원칙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우정사업본부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설명의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투자자 확인사항

적합성 진단 결과	투자자 성향	( (예시) 안정형 )	직원 확인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급	( (예시)5등급 )	

### [참 고] 금융투자상품별 적합한 투자자성향표

투자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투자설명서 상품위험도	매우높은위험 (1등급)이하	높은위험 (2등급)이하	다소높은위험 (3등급)이하	보통위험 (4등급)이하	낮은위험 (5등급)이하	매우낮은위험 (6등급)이하

년 월 일 대리인 (인/서명) 고객명 (인/서명)  
판매직원 (인/서명)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 성향과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를 명확히 인식시킨 후 후속 판매절차를 진행 하거나 우정사업본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개정 2021.7.1.>

## 금융소비자 전환 신청서

### ■ 금융소비자 확인사항

성명 (업체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장/주택)		주소	
E-mail		휴대폰	

### ■ 일반금융소비자에서 전문금융소비자로 전환 신청

확인

본인은 우정사업본부와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 분류되지만 전문금융소비자로의 전환을 신청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금융소비자 유형의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부터 어떠한 조연도 받지 않았으며, 이러한 신청이 본인의 전적인 의사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결정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전문금융소비자로 전환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적정성 원칙, 적합성 원칙 등 일반금융소비자를 위한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금융소비자로 전환됨으로써 증가하는 위험 및 손실을 감수할 것이며,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고객 유형	1. 주권상장법인 : 상장코드 :	2. 전문금융소비자 확인증 보유자 : 등록번호 : 발급일자 : 유효기간 :
----------	-----------------------	--

※ 첨부서류 : 1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2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법인고객]/실명확인증표[개인고객] 및 전문금융소비자 확인증 사본

### ■ 전문금융소비자에서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 신청

확인

본인은 우정사업본부와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되지만 일반금융소비자로의 전환을 신청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투자자 유형의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어떠한 조연도 받지 않았으며, 이러한 신청이 본인의 전적인 의사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결정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신청에 의하여 본인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금융소비자를 위한 보호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일반금융소비자로의 분류 및 일반금융소비자 관련 법령에 의한 거래의 제한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본인에게 발생하는 위험 및 손실 또는 거래상 불편 등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금융소비자 (인/서명)

대리인 (인/서명)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담당직원 (인/서명)

금융소비자 구분	내용
전문금융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성 구비여부, 소유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li> <li>전문금융소비자로 전환한 일반금융소비자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한 전문금융소비자 확인증 징구</li> </ul>
일반금융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자</li> <li>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한 전문금융소비자 (확인자료 징구)</li> </ul>



(별지 제4호) <개정 2024.3.1.>

## (초)고령투자자 가입 확인서

### ■ 고령투자자 가입 확인사항 [고객 작성]

#### 1. 투자권유 유의상품 가입 확인

확인  미확인

본인은 본인이 선택한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임을 안내 받았으며, 상품의 주요 내용 및 위험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본 거래의 투자결과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 2. 조력제도 활용 확인

동의  동의하지 않음

조력자 본인은 고령투자자 고객의 신변 또는 건강상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 및 상품계약사실 수신을 위해 연락처 제공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고령투자자의 신변 등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력자 연락처 확보
- 수집·이용 항목 : 조력자의 성명, 연락처
- 보유·이용기간 : 해당 상품의 거래 종료시까지
-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 : 조력제도 적용 불가

투자자와의 관계:	연락처:	조력자:	(인/서명)
-----------	------	------	--------

### ■ 고령투자자 가입 체크리스트 [영업관리자 작성]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투자권유 유의상품' 가입 시 영업관리자는 해당 고객과의 면담을 통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상품가입 등의 투자권유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확인 사항		확인 내용
1. 투자자정보 변경 여부	고객의 투자성향 분석 결과가 직전 결과 대비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최초 가입 시 "예"로 선택)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투자자금의 성격	투자하시는 자금이 의료비, 노후자금, 긴급 생활자금 등 생계자금에 해당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투자권유 과정의 적법성	담당 직원이 상품을 부적절하게 (부적합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변경 등) 권유 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주요 설명 내용의 이해 여부	담당 직원이 상품의 기본적인 손익구조, 원금 손실 가능성, 중도해지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고객이 해당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건강 및 인지 능력	현재 고객의 건강 상태 및 인지 능력(기억력, 판단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래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li> <li>• 기억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li> <li>•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를 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li> <li>• 투자 결정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li> <li>• 평소답지 않게 용모가 단정하지 않거나 행동이 불안정한 경우</li> <li>• 기존 투자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문을 거절하는 경우</li> <li>• 자금이동이 전혀 없는 계좌에서 자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li> <li>• 최근의 금융거래내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li> <li>• 사회적 관계, 주변 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li> </ul>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년 월 일 \_\_\_\_\_ 우체국 작성직원 (인/서명)

## (초)고령투자자 체크리스트

[영업관리자 작성]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투자권유 유의상품 가입 시 영업관리자는 해당 고객과의 면담을 통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상품 가입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상담 내용을 직접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사항		예	아니오
1.투자자정보 변경 여부	고객의 투자성향 분석 결과가 직전 결과 대비 변동사항이 있습니까?(최초 가입 시 “예” 로 선택)		
2.투자자금의 성격	투자하시는 자금이 의료비, 노후자금, 사업자금, 긴급 생활자금 등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필요할 수 있습니까?		
3.투자권유 과정의 적법성	상담자가 상품을 부적절하게(상품 판매를 위한 투자성향 변경 등) 권유 하였습니까?		
4.주요 설명 내용 의 이해 여부	상담자가 상품의 기본적인 손익구조, 원금 손실 가능성, 중도해지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고객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5.건강 및 인지 능력	현재 고객의 건강 상태 및 인지 능력(기억력, 판단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래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li> <li>· 기억을 잃어버린 듯 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li> <li>·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를 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li> <li>· 투자 결정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li> <li>· 평소답지 않게 용모가 단정하지 않거나 행동이 불안정한 경우</li> <li>· 기존 투자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문을 거절하는 경우</li> <li>· 자금이동이 전혀 없는 계좌에서 자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li> <li>· 최근의 금융거래내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li> <li>· 사회적 관계, 주변 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li> </ul>		
6.기타 상담내용			

확인 일자 :    년    월    일

확인 직원: 직위

성명

(인/서명)

(별지 제5호) 적합성 보고서<보관(교부)용>

## 적합성 보고서

### ■ 대상고객

- 교부대상자 :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 대상상품 : ELS, ELF, ELT, DLS, DLF, DLT

고객명		고객번호	
-----	--	------	--

### ■ 고객의 투자자정보확인서 문항별 응답결과

문항	내용
고객연령대	
-	
-	
-	
-	
-	
-	

### ■ 고객의 투자성향 및 권유 상품

투자성향	0000형
투자권유 상품	

### ■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유의사항

투자권유사유		
핵심 유의 사항	공통위험	(시장/유동성/중도환매/신용위험 등)
	투자대상 기초자산	
	상품의 손익구조 상 특별 유의사항	
	기타	

### ■ 참고사항

본 자료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및 투자관련 요구사항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상이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유의사항은 해당상품의 특성 또는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유익이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일반적인 위험내용 등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위 펀드의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적합성보고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고객명 \_\_\_\_\_ (인/서명)

대리인 \_\_\_\_\_ (인/서명)

작성일자 :	작성직원 :
--------	--------